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7-54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

1. 제정이유

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제14476호, 2016.12.27.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정
 -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(안 제3조)
- 나.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단기준 규정
 -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(안 제4조)
- 다. 기타 조례의 목적,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(3개 조항)
 - 목적(안 제1조), 법령과의 관계(안 제 2조), 시행규칙(안 제 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결과 : 2017. 4. 27. ~ 5. 17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 5. 23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(이하 “구세”라 한다)의 징수는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) ① 법 제11조에 따른 채납자의 채납 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세 채납액(시세를 포함한다) 1천만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“성실납부자”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

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
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
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
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
에 따른다.

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
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한
행위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한 행위는 각 이 조례에 따라 한
행위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준용한 경우
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
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